

세액감면(면제)신청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신청내용							
구 분	근거법령	코드	⑥ 감면을	⑦ 대상세액	⑧ 감면세액	⑨ 한도총족 감면세액	
⑩① 창업중소기업·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5조제16항	11					
⑩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	영 제6조제8항	12					
⑩③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	영 제11조제5항	1I					
⑩④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11조의2제5항	79					
⑩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	영 제27조의2제4항 (2007.2.28.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90					
⑩⑥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30조의2제7항	92					
⑩⑦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	영 제58조제11항	3F					
⑩⑧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	영 제60조제5항	14					
⑩⑨ 수도권 밖 이전공장·본사에 대한 감면	영 제60조의2제13항	08					
⑩⑩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	영 제61조제3항	16					
⑩⑪ 영농조합법인 면제	영 제63조제7항	04					
⑩⑫ 영어조합법인 면제	영 제64조제7항	07					
⑩⑬ 농업회사법인 감면	영 제65조제3항	17					
⑩⑭ 사회적기업 감면	영 제79조의7	1A					
⑩⑮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	영 제79조의7	Z9					
⑩⑯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영 제96조제5항	3I					
⑩⑰ 산림개발소득 감면	영 제102조	18					
⑩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감면	영 제104조의21제5항	1F					
⑩⑲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	영 제116조의14제5항	81					
⑩⑳ 제주투자진흥지구·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	영 제116조의15제7항	82					

⑫①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감면	영 제116조의15제7항	Z8				
⑫② 기업도시·신발전지역 등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 감면	영 제116조의21제7항	97				
⑫③ 기업도시·신발전지역 등 개발사업시행자 감면	영 제116조의21제7항	98				
⑫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	영 제116조의25제6항	1C				
⑫⑤ 금융중심지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 감면	영 제116조의26제9항	1G				
⑫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 감면	영 제116조의27제5항	3H				
⑫⑦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	법 제6조제7항	3E				
⑫⑧ 행정중심복합도시·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	법 제85조의2제5항	1B				
⑫⑨ 기타		64				
⑫⑩ 세액감면 합계		30				

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(⑩③, ⑩⑨ ~ ⑩⑫에 대해 적용)

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* 감면받은 과세연도 / 감면세액: (/), (/), (/), (/), (/)			
감면 한도	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		
	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(⑪ × 50%)		
	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× 1,000만원		
	⑭ ⑪ × 20%		
	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[Min(⑬, ⑭)]		
	⑯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(⑫ + ⑮)		
⑰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(⑯-⑩)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감면구분별로 "대상세액"란과 "감면세액"란에 적습니다.
2. "⑥ 감면율"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.
3. "⑦ 대상세액"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.
4. "⑧ 감면세액"란에는 "⑦ 대상세액"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"⑨ 한도총족 감면세액"란에는 "⑧ 감면세액"과 "⑪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"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최초 세액감면(면제)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.